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2027-28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 추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추진사유

❍ 본 사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행정정보시스템 및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 및 성능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원내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과 대표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임

❍ '2025-26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의 계약만료(~2026.12.31.)에 따라 차기계약 및 연속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제36조2(장기계속계약)

❍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에 의거 2025-2026년 계약과의 연계·연속성 및 행정정보시스템·전산장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긴급 입찰공고를 요청함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무관 (인)